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와 소비자

황선옥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1. 들어가는 말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여가를 즐기는 생활 패턴이 일상화 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1회용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기업이 합세하여 1회용품의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쓰레기의 증가로 쓰레기 처리 시설 확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였고, 매립 시 매립지의 안정화를 저해하며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게 되었다.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부(환경부)는 1994년 3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규제가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등이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제대로 효과를 거두

지 못하여 1회용품 사용은 강력히 규제하여 실효성을 거두도록 10평 이상 매장에서의 1회용봉투인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음식점에서의 1회용 컵, 1회용 용기,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1회용 도시락의 사용이 규제되어 왔다.

그래도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서로 잘 이행되지 않아 이번에 좀 더 강력한 규제로 강화되었다.

소비자 운동을 하는 본인으로서는 아주 반가운 일이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1회용품 규제에 따른 소비자 입장

“지구는 1회용이 아닙니다”, “쓰레기 많이 만드는 자 지구를 떠나라”, “장바구니를 사용합시다” 이와 같은 많은 캠페인 문구도 교육하고 홍보하지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확 바뀌지지가 않았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의 인지도를 조사해 보면, 모두 걱정하며 환경문제를 알고 있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지만 실제 소비 행태를 보면 정 반대인 것으로 나타

났다.

1) 설것이가 하기 싫어 심지어는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을 대접 할 때 1회용 컵,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 백화점에 가면 비닐 봉투 값을 잘 내면서, 동네 수퍼에서는 그냥 달라고 한다. 또한 즈음에는 백화점 의류매장, 제화 매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3)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에게도 자판기에서 1회용컵에 차를 대접하고,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도 개인 컵을 사용하지 않고, 마실 때마다 종이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4) 야외에 나갈 때면 당연히 1회용 접시, 컵, 수저 등을 사용하고 있다.

5) 식당에서 후식으로 제공하는 커피 역시 1회용 종이컵에 받아 마신다.

6) 가정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가 셀 수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편리한데 뭘”, “나혼자만 안 쓴다고 환경이 좋아지니” “몇 푼 한다고” 하면서 대중이란 평계로 책임감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과 생각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비자가 너무나 많다. “언행 일치”가 아니라 “행언 일치”로 먼저 행동하고 말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3. 규제 실효성 위한 소비자 역할

현대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1회용품 자체를 만들어 내

지 않았다면 소비자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상을 소비자가 실천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점점 줄이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1) 백화점 등 유효매장에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자.

2) 음식점에서 후식으로 제공되는 커피는 1회용컵에 요구하자.

3) 화장품회사에서 샘플로 주는 것도 받지 말자.

4) 나들이 갈 때 1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은 사용하지 말자.

5) 행사 때 기업에서 제공하는 막대 풍선, 비닐 방석, 1회용 모자 등의 응원용품을 거부하자.

6)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에 담긴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사먹지 말자.

7)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중 1회용품 관련 분야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화된 내용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제13조(제조사 등에 대한 조치내용 등) 위반 시 이행 명령 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2)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에서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의 규제 범위 확대와 1회용 비닐 식탁보가 포함되었다.

3) 목용탕업, 숙박업에서의 1회용품 사용 무상제공 억제 준수사항이 수상제공 금지로 강화

되었다.

- 4)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억제와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 5)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 시설에서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 6)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합성수지로된 1회용품의 사용 규제가 있다.

4.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따른 바램

규제 완화로 가는 추세에 웬 규제 강화냐면서 특히 1회용 도시락 업계에서는 반대가 심하였다. 그러나 지구는 하나뿐이고, 쓰레기는 처리한다고 해서 내 눈에 안보이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조국을 만들기 위

해서는 소비자, 정부, 생산자, 유통매장 등의 기업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정부는 새로 강화된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처벌이 요구 된다.

기업은 환경을 저해하는 1회용품을 생산하지 말고 유통매장은 규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부가 강화된 내용을 잘 수행하는지, 기업은 강화된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소비자는 실천하기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여 1회용품을 계속사용하고 생산자는 계속 생산을 늘리는 악순환을 거듭하지 말고 서로 협조하여 1회용품 규제 강화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실효성이 없다면, 1회용 봉투의 값을 더 올려도 좋을 것이며 서점, 약국도 확대 시행하고 모든 1회용 비닐 봉투와 1회용품의 가격을 아주 비싸게 책정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835-9041~5 / E-mail : kopac@chollian.net